



총회

배포: 일반
2006년 3월 21일

제60차 회기

안건 제71(a)호

[제3위원회 보고서(A/60/509/Add.1)에 대한]

2005년 12월 16일 총회가 채택한 결의안

60/147.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본 총회는

국제연합 헌장, 세계인권선언,¹ 국제인권규약,² 기타 관련 인권법률,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에³ 따라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를 위한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방법에 따른 구제조치와 배상의 문제를 다루는 일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구제책과 배상의 수혜를 받을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국제사회가 피해자의 역경, 생존자, 미래 인류 세대와의 약속을 준수하고 이 분야의 국제법을 재확인함을 인지하며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이하 ‘본 원칙’)을 채택한 2005년 4월 19일자

¹ 결의안 217A(III)

² 결의안 2200A(XXI), 붙임

³ A/CONF.157/24 (제1장), 제3과

인권위원회 결의안 2005/35와⁴ 2005년 7월 25일자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5/30 그리고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이 총회에게 해당 본 원칙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음을 상기하여

1. 본 결의안 [붙임] 본 원칙을 채택한다.
2. 각국이 본 원칙을 고려하고, 본 원칙의 존중을 촉진하며, 특히 법집행공무원을 포함한 정부의 행정기관 구성원, 군대, 보안대, 입법기관, 사법부, 피해자와 그 대리인, 인권옹호자 및 변호사, 언론과 일반 대중이 본 원칙을 주목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3. 사무총장에게 본 원칙을 모든 국제연합 공식언어로 가능한 가장 광범위하게 배포하는 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각 정부, 정부간 및 비정부기구에게 전송하는 일에 더하여 본 원칙을 『인권: 국제법률 편찬』이라는 제목의 국제연합 출판물에 수록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64차 전체회의

2005년 12월 16일

⁴ 경제사회이사회 공식의사록, 2005, 첨부 3 및 정정문 (E/2005/23 및 Corr.1), 제2장, 제A절 참고.

[붙임]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

전 문

본 총회는

특히 세계인권선언 제8조,¹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²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⁵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14조,⁶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9조,⁷ 그리고 1907년 10월 18일자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 협약 (제4협약) 제3조,⁸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1977년 6월 8일자 의정서 (제1의정서) 제91조⁹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68조·제75조와¹⁰ 같은 국제인도주의법의 조항 등 수많은 국제법률에서 국제인권법 위반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조문을 상기하며,

특히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제7조,¹¹ 미주인권협약 제25조,¹²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13조¹³ 등 국제인권 위반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지역협약상 조문들을 상기하며,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제7차 국제연합 총회의 심의에서 나온 범죄 및 권력 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 기본원칙 선언과 총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문서를 채택한 본 총회의 1985년 11월 29일자 결의안 40/34호를 상기하며,

피해자가 연민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존엄성 및 정의와 구제제도에 대한 접근권이 온전히 존중되어야 하고,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권리 및 구제의 신속한 개발과 함께

⁵ 결의안 2106A(XX), 붙임

⁶ 국제연합, 조약집, 제1465권, 제24841호

⁷ 전게서, 제1577권, 제27531호

⁸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The Hague Conventions and Declarations of 1899 and 190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15) 참고

⁹ 국제연합, 조약집, 제1125권, 제17512호

¹⁰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전권대사의 국제연합 외교회의 공식의사록, 로마, 1998 6월 15일 - 7월 17일, 제1권: 최종문서 (국제연합 출판물, 판매번호 E.02.I.5), 제A절 참고

¹¹ 국제연합, 조약집, 제1520권, 제26363호

¹² 전게서, 제1144권, 제17955호

¹³ 전게서, 제213권, 제2889호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위한 국가적 기금의 설치, 강화, 확장이 장려되어야 한다는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 기본원칙 선언에서 밝힌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원상회복, 보상 및 사회복귀를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한 또는 피해자에 관한 배상의 원칙”의 수립 그리고 당사국총회의가 관할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신탁기금의 설립을 요구하고, 재판소에게 “피해자의 안전, 신체적·정신적 안녕, 존엄성 및 사생활을 보호”할 임무를 부여하고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절차의 단계” 전부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허가할 권한을 부여함에 주목하고,

이 문서에 담긴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이하 ‘본 원칙’)이 그 중한 본질상 인간 존엄에 모욕을 주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주의법의 심각한 위반을 겨냥함을 확인하며,

이 문서에 담긴 본 원칙이 새로운 국제적 혹은 국내적 법적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에서는 다르나 상보적인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주의법상 기 존재하는 법적 의무의 이행을 위한 제도, 방식, 절차, 방법을 확인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특정 국제범죄의 가해자를 국가의 국제적 의무 및 국내법 요건 혹은 국제사법기구의 적용가능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소추할 의무를 담은 국제법과 그런 소추의무가 국제적 법적 의무를 국내적 법률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행되도록 강화하고, 상보성 개념을 지지함을 상기하며,

희생의 현대적 형태가 본질적으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집합적으로 표적이 된 사람들의 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음에 주목하고,

구제책과 배상의 수혜를 받을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국제사회가 피해자의 역경, 생존자, 미래 인류 세대와의 약속을 준수하고 책무성, 정의, 법치의 국제적 법 원칙을 재확인하니,

피해자지향 관점을 채택하면서 국제사회가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주의법을 포함한 국제법 위반의 피해자와의 그리고 넓게는 인류와의 인간 연대를 아래의 본 원칙에 따라 긍정한다는 점을 확신하여,

다음의 본 원칙을 채택한다.

I.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그 존중을 보장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

1. 개별적인 법전이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존중을 확보하

고, 이행할 의무는 다음 각호에서 유래한다.

- (a) 국가가 당사자인 조약
 - (b) 국제관습법
 - (c) 각국의 국내법
2. 국가들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는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자국의 국내법을 자국에 대한 국제의무와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a)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규범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자국의 국내법에서 이행하는 것
 - (b) 재판에 대한 공정하고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접근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입법적 및 행정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
 - (c) 아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원상회복을 포함한 적정하고 효과적이고 즉각적이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것
 - (d) 국내법이 피해자들에게 최소한 국제의무가 요구하는 바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

II. 의무의 범위

3. 개별적인 법전에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존중을 확보하고, 이행할 의무는 그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의무를 포함한다.
- (a)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입법적 및 행정적 조치 여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 (b)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공정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
 - (c) 인권법 또는 인도법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위반행위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궁극적으로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이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사법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제공할 의무
 - (d) 이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배상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의무

III. 국제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

4. 국제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국가에게는 조사할 의무가 있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을 기소할 의무가 있으며, 유죄로 확정된 때에는

처벌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국가는 이러한 사건에서 국제법에 따라 상호협력해야 하고,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에 관할권을 갖고 있는 국제적인 사법기관을 지원해야 한다.

5.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적용가능한 조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여타 국제법상 의무로 정해진 때에는 국가는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국내법에 편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나아가 적용가능한 조약에 규정되거나 여타 국제법상 의무로 정해진 때에는, 국가는 범죄인 인도를 용이하게 해야 하고 또는 범죄인을 다른 국가와 적절한 국제사법기구들에 인도해야 하며,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합치하게 그리고 고문과 여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에 관한 국제법적 규범을 준수하며 피해자와 증인의 지원과 보호를 포함하여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사법적 지원과 다양한 형식의 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IV. 시효규정

6. 적용가능한 조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여타 국제법적 의무로 정해진 경우에는 시효 규정은 국제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국제법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 하는 다른 유형의 위반에 대한 국내법상의 시효규정은 민사소송과 여타 절차를 포함하여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V.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8. 이 문서의 취지상 피해자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해당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감정적 고통, 경제적 손실, 근본적 권리의 실질적인 침해 등을 포함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다. 필요한 경우 그리고 국내법에 따라 피해자는 직접적인 피해자의 직계가족과 피부양자 그리고 피해자를 돕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도 포함한다.
9. 위반행위의 가해자의 확인, 체포, 기소, 유죄판결 여부에 상관없이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가족관계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VI. 피해자의 처우

10. 피해자는 인도성, 존엄과 인권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처우받아야 하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안전, 신체적 심리적 웰빙과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국가는 국내법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폭력이나 트라우마를 겪었던 피해

자가 재판과 배상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 과정에서 트라우마의 재발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별한 고려와 배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VII. 구제조치에 관한 피해자의 권리

11.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구제조치는 국제법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포함한다.
 - (a) 재판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접근
 - (b)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배상
 - (c) 위반행위와 배상 장치와 관련한 정보들에 대한 접근

VIII. 재판에 대한 접근

12.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는 국제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유해야 한다. 피해자가 이용가능한 다른 구제수단들은 행정단체나 여타 단체뿐만 아니라 국내법에 따라 시행되는 장치, 양식, 절차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다. 재판접근권과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절차를 확보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가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 (a) 공적 그리고 사적인 장치를 통해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이용가능한 모든 구제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전파하는 것
 - (b) 피해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 행정적, 여타 절차의 개시전, 진행중, 종료후에도 피해자와 그 대표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사생활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 적절히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복수와 위협으로부터 확보하고, 피해자의 가족과 증인들의 안전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 (c) 재판에 대한 접근을 추구하는 피해자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
 - (d) 피해자가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구제조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 외교적, 영사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13. 재판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 이외에도 국가는 피해자 집단이 배상청구를 제기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를 개발하기 위하여 적절히 노력해야 한다.
14.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구제는 피해자가 당사자적격을 갖는 모든 이용가능한 적절한 국제적 절차를 포함하며, 어떠한 국내법상의 구제조치를 해하지 아니한다.

IX. 피해에 대한 배상

15. 적절하고,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배상은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을 시정함으로써 정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배상은 위반행위와 피해의 중대성에 비례해야 한다. 국내법과 국제법상의 의무에 일치하여, 국가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해당하고, 국가에 그 책임이 귀속될 수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개인 또는 법인, 기타 단체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해야 하고, 또는 국가가 이미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한 때에는 당사자는 국가에게 변상해야 한다.
16.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 피해배상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때에는 국가는 피해자를 위한 국가적인 배상 지원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7. 피해자의 청구와 관련하여 국가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실체에 대하여 배상에 관한 국내적 판단을 집행하여야 하고, 국내법과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배상에 관한 유효한 외국의 법적 판단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가는 배상판결의 시행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를 국내법상 제공해야 한다.
18.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개별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각 사례의 위반의 중대성과 상황에 비례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활, 만족, 재발방지의 보증을 정한 원칙 제19조 내지 제2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19. 원상회복은 가능하다면 피해자를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가 발생하기 이전 상황으로 회복시켜 놓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은 자유의 회복, 인권, 정체성, 가정생활, 시민권의 향유, 원래의 거주지로 복귀, 고용회복, 재산의 반환을 포함한다.
20.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로부터 야기되는 경제적으로 환산가능한 다음과 같은 손해들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각 사건의 상황을 감안하여 적합하고 비례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적인 피해배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 (a)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 (b) 고용, 교육 및 사회적 편익 등 기회의 상실
 - (c) 물질적인 손해와 잠재적 소득의 상실을 포함하여 소득의 상실
 - (d) 정신적 고통
 - (e) 법적 원조 또는 전문가 원조, 약과 의료 서비스,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
21. 재활조치는 의료적 심리학적 보살핌뿐만 아니라 법률적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22. 만족은 필요한 경우 이하의 전부 또는 각부분을 포함한다.
- (a) 지속적인 침해의 중단을 겨냥한 효과적인 조치
 - (b) 진실의 공개가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거나 피해자, 피해자의 친척, 증인 그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또는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입한 사람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실의 검증과 진실의 완전한 공개
 - (c) 실종자의 소재, 납치된 아동들의 신원, 피살자의 시신의 수색, 시신의 발견, 신원 확인,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희망, 가족들의 문화적 관례에 따른 시신의 매장에서 지원
 - (d) 피해자 및 그와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들의 존엄, 명예, 권리를 회복시키는 공식적인 선언 또는 사법적 결정
 - (e) 사실의 인정과 책임의 수용을 포함한 공식적 사과
 - (f) 위반행위에 책임 있는 개인들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제재
 - (g)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헌사
 - (h)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연수와 모든 수준의 교육자료 안에 자행된 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의 포함
23. 재발방지의 보장은 필요한 경우 방지에 기여할 다음의 조치들의 전부를 포함해야 한다.
- (a) 군대 또는 보안부대에 대한 효과적인 민간 통제를 확보하는 것
 - (b) 모든 민간 또는 군사 절차가 적법절차, 공정성, 불편부당성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
 - (c)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는 것
 - (d) 법조, 의료, 보건 직역, 미디어 및 여타 관련 직종의 종사자들 그리고 인권옹호자

들을 보호하는 것

- (e) 우선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회의 전부문에 인권 교육과 국제인도법 교육, 그리고 법집행공무원, 군인, 보안부대 요원에게 이러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
- (f) 법집행공무원, 교정, 여론매체, 의료, 심리, 사회적 업무를 포함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제 기업들의 행동강령과 윤리규범, 특히 국제적 기준의 준수를 촉진하는 것
- (g) 사회갈등의 예방과 감시, 그 해결을 위한 장치를 촉진하는 것
- (h)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을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법률을 재검토하고 개혁하는 것

X. 침해와 배상장치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

24. 개별국가는 일반대중에게, 특히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들에 이 기본원칙과 지침이 정한 권리들과 구제수단 그리고 피해자들이 접근권을 갖고 있는 법률적,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행정적 그리고 여타 이용가능한 모든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들과 그 대표들은 피해를 야기하였던 원인들 그리고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과 관련된 원인들과 조건들에 관한 정보를 추구하고 획득하고, 또한 그러한 위반행위들과 관련된 진실을 알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XI. 차별금지

25. 이 기본원칙과 지침의 적용과 해석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에 일치해야 하고, 이 유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온갖 유형의 차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XII. 훼손금지

26. 기본 원칙과 지침의 어느 조항도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현재 기본 원칙과 지침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상의 모든 위반행위들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를 해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이러한 기본원칙과 지침은 국제법의 특별한 규칙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XIII. 타자의 권리

27. 이 문서의 어느 조항도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보호되는 타자의 권리, 특히 적법절차의 기준에 대한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ⁱ 이재승 교수의 번역(유엔총회가 2005년 채택한 문서의 원칙과 지침 부분만 번역하였음)